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지방상수도요금체계 개선추진지침과 환경부 상수도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개선지침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수도요금표의 업종을 통·폐합하고 단계 및 요금을 효율적으로 조정 개선하여 요금 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 수자원공사의 정수, 침전수, 댐용수료 인상으로 인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추가재원을 확보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수도요금기준중 업종을 종전 6개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적용단계와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을 일반용으로 통합조정
 - 단계를 가정용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일반용은 5단계 통합 조정
- 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수도법 제2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상수도요금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개선 지침에 따라 상수도 요금표의 업종을 통·폐합하여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가 톤당 378.68원이며 판매단가는 365.59원으로서 현실화율이 96.5%에 그치고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에서 지향하는 현실화율 100% 지향방침에 따라 3.58%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음
- 또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요금 체계 개선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폭은 물가 인상을보다 낮음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전용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동결 의결된 사항으로서
- 요금 인상은 2001년 2월 인상 후 원·정수 구입비가 급수 수익에 미치지 못하여 올해부터 월 274백만원 정도의 물값 추가 부담이 발생되어 상수도사업의 건전 재정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인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